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제 차 인권의 철학
강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일시: 1995. . 오전11시

‘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조약’은 1990년 9월 2일 비준국이 20개국을 넘어 발효하게 되었다. 이 획기적인 조약의 출발점은 1924년에 국제연맹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제네바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 ‘아동’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

고대·중세 이후 유럽에 있어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정 받지 못했다. 잘해야 ‘미완성인 어른’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몇몇 예외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동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길들이기’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완성인 어른’이라는 아동관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기 사상운동의 선봉이었던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의 체벌이 판을 치는 비인도적인 학교교육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그 존엄에 걸맞게 처우할 것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르네상스 시대 아래 사람들은 적어도 사상적으로만는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말하는 ‘아동’은 어느 특정의 사회계급에 속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아동이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이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 샤크 루소가 가장 명확하게 전개했다. 루소는 “아동의 발견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교육소설 <에밀> 머리말에서 아동의 독자성, 아동으로서의 완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고유의 가치나 인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주장이 나온 셈이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그 후 페스탈로치나 플레베르 등 근대 교육사상가들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어 왔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신교육운동’은 ‘아동중심의 교육’ 등 주장을 통해 학습주체로서의 아동의 인간성 존중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제네바선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특히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두번 다시 이런 참상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평화적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결의로써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었다.

국제연맹은 1924년 9월 26일 제5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짐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자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라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5개조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제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어져야 한다.

제2조. 아동은 기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지체이나 비행에 빠져 있는 아동은 그 회복과

생생을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가 주어져야 한다.

제3조. 아동은 재난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제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

이 선언에 “아동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아동의 권리선언’(1959)에 계승되고 결국 ‘아동의 권리조약’(1989년)에까지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 ‘제네바선언’에는 제2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즉 이 선언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네바선언’의 특징이다.

‘제네바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아동의 권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국제적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1차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의 큰 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년도 못되어 인류는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1300만명이나 되는 아동이 이 전쟁으로 죽어갔다.

인류를 불행의 밑바닥까지 몰고 갔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럽에는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두번 다시 독재나 압제의 불행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하나의 결과가 ‘UN헌장’(1945년 6월 26일 서명, 같은 해 10월 24일 발효)이다. 이 헌장에 의하여 국제연합(UN)이 창설된 것이다. 국제연합 가맹국들은 ‘평화’와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창설된 바로 이듬해인 1946년 UN은 그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4년의 ‘제네바선언’이 그랬듯이 전세계 사람들이 튼튼히 연대하기 위한 중심핵으로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아동의 권리선언’ 작업에 앞서서 경제사회이사회는 해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인권위원회는 탄생과 동시에 ‘국제권리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권리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가지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 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선언에는 자유평등, 차별금지, 생명·신체의 안전, 노예·고역의 금지, 고문·잔인한 처우와 형벌 금지, 사람으로서 인정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이전·거주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서 이들과 함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생활보호, 어머니와 아이 보호,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속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두개이다. 즉

첫째로 제25조 [생활보장]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하면서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아니든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제26조 [교육의 권리]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아울러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육목적을 밝히면서 3항에서는 “부모는 아동에게 출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의 권리선언’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4.. ‘아동의 권리선언’

(1) 성립과정

19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현장의 작성작업은 실로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아동의 권리선언’이 성립함으로써 1959년 11월 20일에 끝났다. 성립에 이르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의 연대기는 대략 아래와 같다.

- * 1947년 10월 제2차 UN총회 사회위원회(제3위원회)에서 현장 성문화를 위한 기획 시작.
- * 1948년 ‘제네바선언’의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현장 작성을 결정. 사회위원회가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준비를 요청.
- * 1950년 사무총장, 사회위원회에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된 선언안을 제출. 이 전문에서는 ‘제네바선언’의 원칙인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는 언명 외에 “아동은 법률상의 미성년인 까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 사회위원회는 이 사무총장안을 심의, 경제사회이사회에 낼 선언안을 작성했다. 전문과 10개조항으로 된 이 안은 명칭을 ‘현장’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정했으며 특히 전문에서는 “아동에게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고 하면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목적을 위하여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가 난다. 이 안은 1950년에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 * 195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위의 안을 심의한 결과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로 보내고 의견을 구하려 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이를 1957년까지 미루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시키기 위한 초안 작성 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 외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따로 냈으므로써 ‘세계인권선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해진다.
- * 19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위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아동은 법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권리 행사를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선언’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나라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이 문서를 단순한 선언으로 할지 조약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은 권리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조약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아르헨티나 등은 각국의 법적·사회적 현실로 보아 조약화는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 * 결국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모아 ‘선언’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영국 등이 권리 보장을 위한 이행조치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원칙만으로 된 간결한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소련·폴란드 등은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고 권리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를 정하고 아울러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가 제출한 두 가지 수정안, 즉 “각국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 및 편의를 법률로써 부여해야 한다.”와 “가정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사회 및 공적기관에 특별한 보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다.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작성단계에서 성립까지 한결같이 조약화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권리선언’을 알찬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나중에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의 권리선언'(안)은 1959년 UN 제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

- 전문 *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
*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 재확인
*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보내고 또한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선언을 공포하고 부모, 개인인 남녀, 민간단체,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권리의 준수를 위하여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조: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조: 아동은 특별의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지능적·도덕적·정신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와 편의를 부여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최고의 고려가 빼풀어져야 한다.

3조: 성과 이름 그리고 국적으로 가질 권리

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5조: 신체·정신·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의 치료·교육·보호를 받는다.

6조: 아동은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애정과 이해를 가능한 한 그 부모로부터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양호가 주어져야 한다.

7조: 교육을 받을 권리

8조: 아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최초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9조: 아동은 방임,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매춘의 대상이 되어서는 한된다.

10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됨과 동시에 이해·관용·우애·평화·사해동포의 정신 아래 그리고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제네바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선언은 '제네바선언'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풍부케 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의미 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처럼 '아동의 권리선언'도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 규제력의 결여로 인하여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5. '아동의 권리조약' 제정에의 발걸음

(1)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이끈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국제권리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권리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권리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 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대체로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두개의 조약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다. 그리고 B규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형폐지와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를 직접 UN에 제소하는 절차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이 세가지 조약은 모두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했다.

두가지 규약은 UN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의 이념과 정신을 확인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전문을 가지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또한 제1부에서 인민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제2부에서 규약에 담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체약국이 져야 하는 노력과 의무,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평등, 공공복지의 관점에서의 인권제한, 인권의 파괴 혹은 부당한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제3부의 실체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권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A규약은 노동권, 좋은 노동조건 확보권, 단결권,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B규약은 생존권, 고문 등 금지, 노예·강제노동 금지, 주거·이동·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AB규약에 가입했다.

(2) '국제 아동의 해'와 '아동의 권리선언'의 조약화 작업

UN은 '아동의 권리선언'(1959년) 20주년에 해당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정하여 아동인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정부는 제34차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이 안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요르단, 세네갈, 시리아·아랍공화국, 폐루 등 7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3월 8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는 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전문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선언'의 10개조항에다 9개조의 실시조치조항을 더한 총 19개조항으로 된 조약원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가능하면 '국제 아동의 해'인 79년에 조약으로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1979년 3월까지 UN에 모아진 여러나라의 의견은 총 57건,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 조약초안에 찬성하여 1979년에 조약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부류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선언'과 '조약'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동의 권리선언'을 그대로 조약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국제 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가지 연구성과를 기다린 후에 조약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대체로 후자 쪽이었고 1979년 조약 채택에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1979년에 조약을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약화를 위한 작업그룹은 1979년에 만들어졌고 의장에 폴란드의 아담 로파트카교수가 선출되었다. 그는 1989년 '아동의 권리조약' 채택 때까지 한결같이 조약 초안을 만드는 일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

1979년 10월 5일 폴란드는 전문과 28개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 수정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같은 해 1월 16일부터 4일동안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바르샤바회의' (서유럽 11개국, 동유럽 8개국, UN관련기관 3단체)의 성명과 결의를 반영시켜 폴란드정부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 수정초안은 이후 해마다 열린 작업그룹 심의에서 '아동의 권리조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필요한 가정에의 원조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국가 및 부모는 그 아동이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의견표명의 권리)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아동의 권리조약'에 반영 되어 있다.

10년동안의 기나긴 조약화작업을 거쳐 전세계의 인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결과물인 ‘아동의 권리조약’은 완성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이 날은 아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가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이후 실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구제·보호 받아야 할 아동’에서 ‘권리의 향유주체로서의 아동’, 그리고 다시 ‘권리의 행사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아동관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아동의 권리조약’ 해설

‘아동의 권리조약’의 성립

지금 아동의 지위는 과거 노예나 여성의 지위를 닮았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권리를 갖지 않고 또는 그들 대신에 자비롭게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주실 ‘주인’ 비호하에 있기 때문에 권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인식되어 있다.

1989년에 UN총회는, 1924년의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 이래 65년만에, 그리고 1959년의 UN ‘아동의 권리선언’ 이래 30년만에, ‘아동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 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명이나 죽어간다고 하며 ‘절대적 빈곤’ 하에 있는 아동은 1억5000만명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범죄 등등이 넘쳐 아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힘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이 조약은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전진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과 아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정시킨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인권운동사랑방에 의한 조문내용 요약)

전문

I부

- 1조-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2조-당사국은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권리 보장.
- 3조-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4조-당사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입법, 행정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조-당사국은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부모의 감독·지도책임과 권리·의무 존중한다.
- 6조-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에의 권리 인정, 생존·발전의 확보.
- 7조-이름·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 8조-국적, 성명, 가족관계 등 법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 받을 권리.
- 9조-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및 분리될 때 필요한 절차.
- 10조-당사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을 긍정적으로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11조-당사국은 아동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이송하는 행위와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퇴치해야 한다.
- 12조-견해를 형성할 능력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는다.
- 13조-표현의 자유.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전달할 자유.
- 14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15조-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 16조-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
- 17조-당사국은 아동의 대중매체에의 접근, 다양한 국내·국제적인 정보 및 자료에 접근을 확보한다.
- 18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공동 양육책임. 그 책임 수행을 위한 당사국의 원조의무.
- 19조-당사국에는 부모의 아동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20조-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 그 가정환경이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 보호.

21조-입양을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상세한 절차규정.

22조-난민 아동 보호 및 원조. 그러기 위한 국제적 협력.

23조-장애 아동, 그 존엄, 자립 촉진, 사회참가를 용이케 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보장.

24조-“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국제협력 촉진.

25조-의료시설 등에 조치된 아동이 받는 치료 기타 모든 조치에 당사국이 정기적 심사.

26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7조-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8조-교육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 징계는 아동의 존엄과 일치해야 한다.

29조-교육목적. 능력의 최대발전, 인권, 자국 및 타국 문명 존중, 평화·관용·성적 평등·자연환경 존중.

30조-민족, 종교, 언어, 종족상의 소수자 아동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 등을 존중 받을 권리.

31조-휴식하고 여가를 갖는 권리. 나이에 걸맞는 놀이와 오락을 할 권리,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가할 권리.

32조-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33조-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그 생산과 거래에 아동을 이용 못하게 모든 조치.

34조-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

35조-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국내·국제적인 조치.

36조-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금지.

37조-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 간만.

38조-무력분쟁 중 당사국은 국제인도법 존중.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및 입대를 최대한 금지.

39조-모든 형태의 방임, 착취, 고문, 가혹행위, 형벌, 무력분쟁에 희생된 아동의 신심회복·사회복귀 촉진.

40조-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기타 상세한 규정.

41조-이 조약 이상으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기존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

II부

42조-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어른과 아동에게 홍보해야 한다.

43조-'아동의 권리위원회' 설치 및 그 임무규정.

44조-당사국은 조약과 관련해 취한 조치와 이룩한 진보를 '위원회'에 보고. 보고는 국내 공중이 널리 이용.

45조-'위원회'의 작업방식. UNICEF, UN전문기관, 기타 자격 있는 단체와의 협력.

III부

(46조 ~ 54조는 생략)

'아동의 권리조약' 내용해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기존의 국제인권법도 (참정권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동의 인권은 어른의 인권 속에 매몰되어 뚜렷이 인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현실과 구조를 반영하면서 아동에게 특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쓸모있는 기준들을 담은 법적 문서이다.

1) 일반규정 (1조~5조)

① 특히 유의할 점은 '아동', '부모', '국가'의 3자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즉 우선 아동의 권리

보장은 아동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조자로서 첫째로 부모의 지도권(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런 후에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에 원조 및 보호 의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5, 18조)

② 조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전문 마지막 항, 4, 11, 21, 23, 24, 28, 34, 35조)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것이 각국 내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2) 실체적 권리의 내용 (6~41조)

① 생명권 · 생존권 · 발전권(6조)

'조약'은 '생명에관한 고유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 (6조) 이 생명권이란 타자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8(아동의 행방불명 방지와 관련), 24, 26, 27, 37조 등).

생명권은 절대불가결한 기초적 권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발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대중매체에의 접근권, 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놀이에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17, 28, 29, 31조).

②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권리 (7, 8, 9, 10조)

아동을 양육할 일차적 책임자는 당연히 부모이다. (18)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7-①) 따라서 조약은 우선 '신분(아이엔티티)을 보존할 권리'(8),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9), 가족 재회(10)와 관련된 규정을 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19, 9-②, 20, 21조)

③ 의견표명권 · 시민적 권리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일 것이다. 이것은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청문을 보장함(12조)은 물론 학교 교칙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관한 반대권 등등 아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장차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도 표현·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이 기본적으로 어른과 똑같이 인정되고 있는 데 이것은 추상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서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으로 획기적인 아동관의 진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년사법(司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었다(40조). 어른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보장을 시민적권리로서 확인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에 맞는 조치를 규정한다.

④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아동의 보호 · 원조, 장애아동의 권리, 소수자 · 선주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취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마약 ·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성적 취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유괴 · 매매 · 거래 방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보호 등 규정(22, 23, 30, 32, 33, 34, 35, 38조)은 오늘의 세계적 인권상황의 직접적 반영으로서. 특별한(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권리들이 단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까지 규정되어 있다. '조약'의 실천적 성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3) 국제적 실시조치

당사국에 과해진 조약상 의무가 당사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10인의 개인자격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UN에 설치된다(43조).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의 실시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들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이뤄진 진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UN에 당사국 대표를 참석시켜 질의를 한다. 특히 이 '조약'의 보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① '위원회'는 UNICEF 등 전문기구와 협력한다. 이들 전문기구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조약규정의 실시 여부를 '위원회'가 검토할 때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기도 하고(45조a) 당사국

의 보고 및 '위원회'의 당사국들에 대한 소견·제안을 송부 받아 검토하면서 당사국에 기술적 원조와 조언을 주기도 한다(45조b).

② NGO(특히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갖는 NGO)들은 "기타 자격이 있는 단체"로서 '위원회'의 작업에 일정 정도 참가할 수 있다(45조a,b). 이것은 단순한 옵저버로서가 아니라 조언이나 원조를 요구 받는 지위가 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의 역할은 조약의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역할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조직하는 데도 있으며(45조 첫부분) UNICEF나 NGO들의 역량은 조약을 기초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의 국제적 실시과정에 있어서도 불가결의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당사국은 또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44-⑥)". 이 규정의 취지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때 국내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단체들과 널리 협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사전에 협의가 잘 되면 국내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UN에서까지 계속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아직 전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과 정부의 의무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권리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즉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맞추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점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아동의 권리조약'을 은폐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조약' 제42조의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분명한 '인권교육'이다. 또한 이 조약 28조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29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의 '교육목적' 중에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UN헌장에 정해진 여러 원칙의 존중을 발전케 한다."는 것이 있는 데 이것 역시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미한다. 즉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은 조약상 가입국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눈씻고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런 '인권교육'을 찾아낼 수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1993년 세계인권선언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사실을 감추고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술만이 세련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인권하루소식' 1994.1.13.)